

02 수정신고, 경정청구, 기한후신고

지방세기본법 개정('19. 12. 31. 법률 제16854호)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

1. 수정신고(지방세기본법 제49조)

□ 의의

-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이를 '수정신고'라 함

□ 요건

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
 - ①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
 - ②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
 - ③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

□ 효과

- 적법·유효한 수정신고가 있으면 수정신고 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며,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



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100분의 90 내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감면됨.
다만,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음.

수정신고 * 법정신고기한까지 기 제출한자	기한 후 신고 * 법정신고기한까지 미 제출자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개월 이내: 90% • 1개월 초과 ~ 3개월 이내: 75% • 3개월 초과 ~ 6개월 이내: 50% • 6개월 초과 ~ 1년 이내: 30% • 1년초과 ~ 1년6개월 이내: 20% • 1년 6개월 초과 ~ 2년 이내: 1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개월 이내: 50% • 1개월 초과 ~ 3개월 이내: 30% • 3개월 초과 ~ 6개월 이내: 2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: 50% •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: 50%

2. 경정청구(지방세기본법 제50조)

□ 의의

-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, 이를 '경정청구'라 함

□ 요건

- (원칙)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
 - ①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(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)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

- ②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 (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)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
- (예외)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(경정) 청구 가능
 - ①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판청구,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(화해, 그 밖의 행위 포함)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
 - ②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·결정(경정) 내용과 상이할 때
 - ③ ① 및 ②의 사유와 유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 - 1. 최초 신고·결정(경정)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 허가나 처분이 취소된 경우
 - 2. 최초 신고·결정(경정)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
 - 3. 최초 신고·결정(경정)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
 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□ 효과

-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·경정하거나 결정·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함. 다만,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, 심판청구 또는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

3. 기한 후 신고(지방세기본법 제51조)

□ 의의 및 요건

-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이를 '기한 후 신고'라 함. 기한 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

□ 효과

- 기한 후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한 후 신고 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,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(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)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신고 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비로소 그 때 세액이 확정됨
-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및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감면 제도 운영

〈수정신고·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비교〉

구분(효과)	수정신고	경정청구	기한 후 신고
세액의 확정력	○	×	×
가산세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개월 이내: 90% • 1개월 초과 ~ 3개월 이내: 75% • 3개월 초과 ~ 6개월 이내: 50% • 6개월 초과 ~ 1년 이내: 30% • 1년 초과 ~ 1년6개월 이내: 20% • 1년6개월 초과 ~ 2년 이내: 10% 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개월 이내: 50% • 1개월 초과 ~ 3개월 이내: 30% • 3개월 초과 ~ 6개월 이내: 20%